

지정교육기관 지정(변경지정)서

교육기관명			
주소			
교육기관의 장			
교육과정	직 종	정 원	교육기간
			년 월(실습 월)
			년 월(실습 월)
			년 월(실습 월)
지정조건			

「선박직원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(변경지정)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